

## 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(강남)

자원회수시설 영향권 주민을 위하여 설립한 강남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

### 예산(안) 총괄 (단위 : 천원)

2014 최종예산 (A)	2015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270,000	311,000	41,000	15.2%

### 사업설명 (단위 : 천원)

#### 사업목적

- 강남주민편익시설의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이용 주민 만족도 증가 기여

####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 -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
  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
  -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9조
  -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위·수탁 협약서 (노후시설 개·보수에 필요한 비용 요청)

####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강남주민편익시설
  -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(일원동 4-5)
  - 시설규모 : 지하1층/ 지상3층/ 연면적 6,511㎡
    - 수영장, 헬스장, 사우나, 골프장, 독서실, 문화교육실, 건강교육실 등
  - 위탁운영사 및 위탁기간 : (사)흥사단, 2014.1.28 ~ 2017.1.27
- 사업기간 : 2015. 1 ~ 12
- 사업내용 : 지하주차장 진입로 캐노피설치 및 수영장등 노후시설 교체
- '15년도 소요예산(안) : 311백만원

#### 2015년도 예산(안)(단위 : 천원)

구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안)(B)	증감(B-A)
계	-	270,000	311,000	
민간대행사업비	-	270,000	311,000	

2015년도 예산(안) 산출 근거(단위 : 천원)

■ 민간대행사업비(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) : 311,000천원

-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: 40,000천원
  -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 : 40,000천원 × 1식 = 40,000천원
- 노후 기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: 247,000천원
  - 유산소 기구 및 근력기구 교체 : 75,000천원 × 1식 = 75,000천원
  - 수영장 복합여과기 도장 및 여재 교체 : 27,000천원 × 1식 = 27,000천원
  - 수영장지붕 누수방지 에폭시 도색 : 40,000천원 × 1식 = 40,000천원
  - 샤워장 자동급수 설비 교체 : 15,000천원 × 1식 = 15,000천원
  - 탕여과기 교체 : 25,000원 × 1식 = 25,000천원
  - 승강기 전기시설 교체 : 20,000천원 × 1식 = 20,000천원
  - 2층 공조기 교체 : 45,000천원 × 1식 = 45,000천원
- 설계 및 감리 : 24,000천원
  - 설계비 : 건축, 기계, 전기 설계비 1식 × 14,000천원
  - 감리비 : 건축, 기계, 전기 감리비 1식 × 10,000천원

사업추진 절차

○ 집행절차

- 기본계획수립(위탁사) → 기본계획승인(시→위탁사) → 공개입찰(위탁사) → 공사진행(위탁사) → 공사준공(위탁사) → 공사비청구(시←위탁사) → 집행(시)

사업효과

- 노후 시설의 교체 및 보수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

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- 추진방향 :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
- 추진일정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311,000	
기본계획 수립	2015. 1	-	
공사시행	2015.3 ~ 10	-	
공사준공	2015.10	311,000	공사준공후 집행

실·본부·국	부서명	담당자			
기후환경본부	자원순환과	자원회수시설 팀장	정연구 (2133-3680)	주무관	정재형 (2133-3682)

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계획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.

<http://opengov.seoul.go.kr/sanction>